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2010. 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5 No.2 June 2010

투고일자: 2010년 5월 31일
심사일자: 2010년 6월 10일(심사자 1), 2010년 6월 1일(심사자 2), 2010년 6월 2일(심사자 3)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3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고찰*

강 선 준**

목 차

Ⅰ. 서론
Ⅱ. 국내 기술지주회사 설립 · 운영 현황
1. 대학의 경우
2.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Ⅲ. 기술지주회사 법제의 비교 검토
1. 근거법령 및 개념상의 비교
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상의 비교
3.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상의 비교
4. 자회사 설립요건상의 비교
5. 업무범위상의 비교
6. 회사운영에 대한 규제상의 비교
7. 회사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상의 비교
Ⅳ. 결론

*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010년 실제로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수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기술한 글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부족한 필자의 글에 기탄없는 의견을 피력해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관리원, 법학박사(boytoy@kist.re.kr)

초록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성과물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에 관련한 법으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바 2010년 7월 13일 시행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구기관의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여, 공공연구기관들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 촉진법상의 기술지주회사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비교하면서 공공연구소에서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검토를 하였다.

개정 기술이전촉진법은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현대경제사회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기존 법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법적기반을 구축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생각한다. 동법상의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기술지주회사의 재원을 기존의 현물출자 중심에서 정부출연금을 사용가능토록 함으로써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법제와 차별화 되고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출자기술을 녹색기술 · 첨단기술에 제한한 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내용이 약간 상이하지만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규율하는 법규의 통합도 고려할 주제이다. 기존의 학자들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인 방법으로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입법하자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별도의 법을 입법하는 방법보다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산촉법과 기술촉진법상의 조문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규정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육성과 운영에 편의를 도모하는 형태로 입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많은 공공연구기관들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 혹은 자회사를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의 대표적인 형태로 기술지주회사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지식재산관리회사, 기술사업화

Ⅰ. 서론

현대의 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방법이 다양해 졌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기초원천 성격의 연구성과를 위주로 수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수요자 중심의 상용화 연구(Research and Development)의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개방형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허권 취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등이 제기하는 특허분쟁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 보호하고 라이센스(License)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성과물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09. 7.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도 지식기반경제 시대 우리 경제의 창의 ·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의제로 대학 · 공공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 완화, 사업영역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하여 "기술가치평가-사업화기술개발-투자연계"까지 일괄 지원(2013년까지 200억원)을 제시하였다.[1)]

정부는 이미 2007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2008년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덕특구법'이라 한다.)에서 대덕특구 내에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 보도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2009. 7. 19자. 4면.

그러나 대전과 그 인근지역 이외의 공공연구기관[2]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촉법이나 대덕특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

2010년 7월 13일 시행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촉진법' 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여, 구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연구기관들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종래에 인정된 기술지주회사 제도 및 유사제도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술이전 촉진법에서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연구소에서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Ⅱ. 국내 기술지주회사 설립 · 운영 현황

1. 대학의 경우

국내에서는 2008년 한양대에서 최초로 설립 인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고 2009년 12월 현재 총 8개 기술지주회사, 17개의 자회사가 설립이 완료되었다.

〈표 1〉 국내대학 기술지주회사 현황[3]

대학명	설립 인가일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자회사설립현황
		현금	현물	계	
한양대	2008.07.24	1,500	2,091	3,591	트란소노(주),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서 규정된 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기술기반 벤처기업 육성방안」, 2009. 12; ETRI 사업화본부, 「ETRI 기술지주회사–기술사업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제4차 출연(연) 정책협의회 선진화 사례발표자료, 2010. 3, 18면 참조하

					(주)코레스코, (주)크린컴
서울대	2008.10.29	3,000	3,943	6,943	(주)STH 아이젠텍 (주)STH팜 (주)STH 아트엠
삼육대	2008.10.29	157	343	500	SU건강 케어
서강대	2009.01.13	400	1,938	2,338	(주)에스메디
경희대	2009.04.15	100	354	454	한방바이오(주)
강원대 (5개 연합)	2009.04.15	500	930	1,430	(주)아이쿠, (주)AG그린 (주)신타지아코퍼레이티드, (주)하농바이오, (주)엔바이오시스, (주)심층수수산
고려대	2009.08.18	4,000	5,421	9,421	위델소제, 오라픽스
인천대	2009.10	100	635	735	
소 계 (8개 지주회사)		9,757	15,655	25,412	17개 자회사

출자금액은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순이며 강원대를 비롯한 5개대 연합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2.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지주회사 설립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8년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를 시작으로 2009년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추진 TFT팀을 구성한 이후 산업

여 재구성함.)

4) ETRI, 전게발표자료, 25면 이하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기술연구회의 심의를 받아 설립을 진행하였고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 선임을 최종 확정하고, 정관 인증, 이사회 구성 등 법인설립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5월에 기술지주회사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5)]

회사의 명칭은 (주)에트리 홀딩스(ETRI-Holdings Inc.)이며 회사의 설립형태는 벤특법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소재지는 초기에는 대덕특구에 본사를 설치, 성장기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설립 자본금 규모는 200억원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출연연구원의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70개의 자회사(연구소 기업을 포함)를 설립하고 7개 이상의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Global IT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 영역으로는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Venturing)과 IT 및 IT 융합분야에 특화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기술료 및 투자수익을 통한 R&D 재투자 재원확보는 1,843억원으로 추정되고 자회사 투자재원과 직무발명자 보상금은 각각 611억원과 46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1〉 (주)에트리 홀딩스(ETRI-Holdings Inc.)[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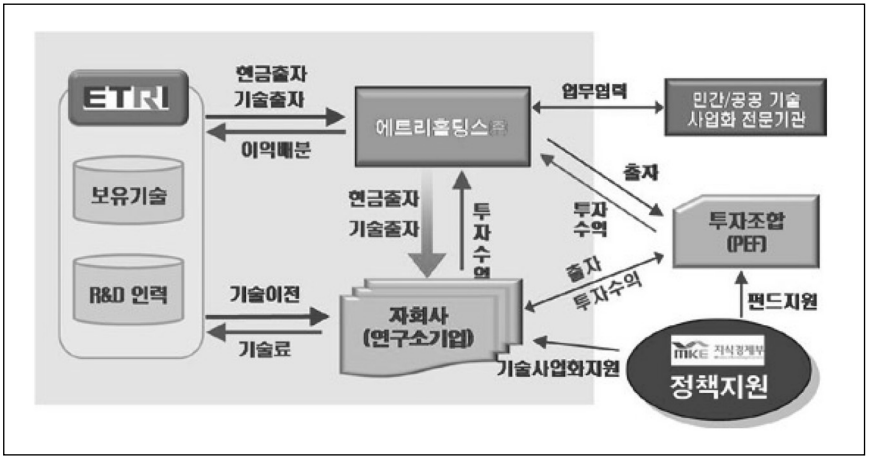

5) "ETRI, 기술지주회사 초대사장에 박기순씨 내정", 보안뉴스, 2010. 4. 11자.

6) "ETRI 기술지주회사 에트리 홀딩스 설립", 보안뉴스, 2010. 5. 31자.

〈표 2〉 (주)에트리 홀딩스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사업영역	사업내용	기대효과
연구소기업 설립 육성 (Venturing)	– 기술사업화 아이템 발굴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관리 – 자회사 육성 및 투자 회수	– 선도기술기반의 창업 및 기업 공동설립의 활성화 – 기술출자를 통한 중소벤처에의 기술 공급 확대
기술사업화 컨설팅	– 기술패키징 및 마케팅 – 지식재산권 컨설팅 –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 라이센싱	– 기술사업화 증대 – 지식재산권 활용성 증대
기타	– 벤특법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기타 부대사업 등)	

Ⅲ. 기술지주회사 법제의 비교 검토

1. 근거법령 및 개념상의 비교

1) 근거법령 및 입법목적상의 비교

산촉법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協力)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 기술을 개발 · 보급 ·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촉법 제1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촉법을 관할하고 있다. 산촉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학 또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동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법을 준용함을 밝히고 있다(산촉

법 제36조의9).

벤특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거나 창업을 장려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기업체가 주 적용대상이다.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기존법률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개의 조문마다 특례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벤특법 제1조).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한다. 동법의 제정취지상 다른 법률에 기술이전 · 사업화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근거법이 된다.

민간기업과는 차별성이 있겠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중요한 양대 축인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설립과 운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법적주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과 세부적인 규정이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은 입법적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2) 기술지주회사 개념상의 비교

산촉법에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의 일정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7]를 말한다(산촉법 제2조제6호).

또한 동법에서 "자회사(子會社)"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산촉법

7)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 ·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추기능 외 2인, "선진특허강국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응방안과 특허정책 연구", 「특허청 정책보고서」, 2008. 7, 113면; 송완흡,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5, 5면 참조; 김선정, "기술지주회사의 법리", 「상사법 연구」, 제25권 제4호(2007), 한국상사법학회, 280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이를 지배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제7호).

벤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벤특법 제2조).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아니다.

기술이전촉진법은 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 ·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면서 산촉법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는 제외하고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0호). 따라서 동법이 시행되는 2010년 7월 부터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가능하도록 법적 균형성을 확보한 동 입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산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공연구기관[8]까지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덕특구를 제외한 국공립연구기관에서도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근거규정과 함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상의 비교

산촉법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협력단이 없는 학교법인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산촉법 제36조의2). 이러한 맹점을 해소하고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8)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① 국공립 연구기관, ②「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③「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기타「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 · 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벤특법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이 연구소 기업 내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벤특법 제11조의2).[9]

기술이전 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 단독 혹은 복수의 공공연구기관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의3). 대덕특구가 아닌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등 전체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3.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상의 비교

산촉법에서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주식회사이며 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현물출자를 할 것(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산촉법 제36조의2 제2항).

사실상 대학이 현금출자만을 통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어야할 재원이 수익사업 혹은 기업의 설립을 위해 과도하게 투자된다면 대학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이전촉진법상 공공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허락한 점, 기술평가에 일정비용이 발생하는 점, 설립목적이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술출자비율을 20~40%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10]

산촉법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조사인의 보고의무 등에 갈음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산촉법 제36조의2 제3항).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 · 경영관리 및 부가적인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에 (주)에트리 홀딩스라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을 검토하면서 벤특법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ETRI 사업화본부, 「ETRI 기술지주회사–기술사업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제4차 출연(연) 정책협의회 선진화 사례발표자료, 2010.3, 25면 참조).

10) 송완흡, 전게보고서, 17면.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11]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다(산촉법 제36조의2 제4항).

벤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역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당해회사의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였고 보유인력과 시설에 대하여 경영이나 기술분야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것과 독립된 전용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12]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벤특법 제11조의3제1항).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벤특법 제11조의3제2항).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제3항).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지주회사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운영상 상법 제331조의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자한 가액만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어 직접 무한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인적회사보다는 효과적으로 위험[13]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대표적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 업무, ② 자회사의 기업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③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④ 자회사의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⑤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 · 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⑥ 자회사의 홍보, 교육 · 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⑦ 제26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협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및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 · 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등이다.

1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① 별도로 지정하는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② 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이다(벤특법 시행령 제4조의2).

13) 경영상의 위험도 있지만,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e Office)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기술의 소유권이 공공연구기관에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대

인 공동기업의 형태이며,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여 투하한 자본을 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최적화된 회사의 형태이다. 산촉법 등 기존의 법률이 모두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입법이다.[14)]

통상 공공기관의 특성상 임직원에게는 직무충실의무와 도덕상 품위유지의무 등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술지주회사의 임원으로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다만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혹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첨단기술로 한정시킨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의3 제4호). 물론 보유기술의 사업화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국가적 필요에 부응하고 국정과제인 녹색기술 · 첨단기술로 제한하여 공인된 기술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난립을 예방하는 목적은 합리적이지만,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특성상 녹색성장기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입법상에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논리로 남겨두거나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산촉법 등 기존 법률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에서 50%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기술을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출자를 규정하였다. 이는 평가비용의 증가와 기술출자의 감소로 인한 회사 자본금 규모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왜냐하면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평가비용이 통상 건당 2천~4천만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는 기술지주회사 운영과는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며 평가비용은 기술지주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 권리를 양도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14) 김선정 교수는 기술지주회사 형태에 유한회사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상법 제545조에 따라 사원이 50인 이내로 한정이 되는 점, 상법제556조 · 제585조에 따라 사원지위의 양도에 특별결의를 필요한 점, 주식회사보다는 지위의 양도가 비탄력적인점 등을 고려해볼 때 주식회사로 한정한 입법은 타당하다. 김선정, 전게논문, 280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5)]

현물출자는 과대평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정관에 현물출자의 재산,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또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 등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299조제1항, 제310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촉진법을 적용받는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어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하는 경우보다 설립절차를 간명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1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지분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업화라는 기술지주회사의 고유의 목적과 함께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을 충실하게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이다.

〈그림 2〉 현물출자 하는 경우 회사설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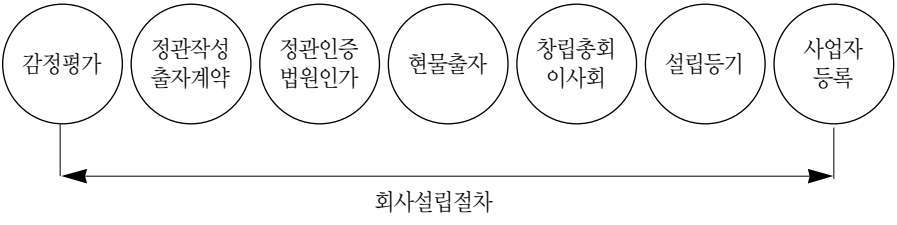

15) 정찬형, 「제13판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0, 599면;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변태설립사항으로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관 · 주식청약서 등의 인쇄비,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설립사무소의 임차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공장 · 건물 · 집기 · 원료 등의 구입비인 개업준비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6)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이다(기술촉진법 제23조).

4. 자회사 설립요건상의 비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상법 제361조).

산촉법상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고 자회사의 지분양도 혹은 대통령령[17]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자회사는 기술지주회사 혹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 소유할 수 없다. 또한 회사의 합병 등을 통하여 해당주식을 취득 · 소유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통하여 다른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순환출자의 지배구조를 금지하는 조항은 타당하다. 상법에서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또 회사는 기업위험을 부담하는 외에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며, 회사의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이다.[18]

반면에 벤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17) 산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란 ①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②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등이다(산촉법 시행령 제36조의5).

18) 정찬형, 전게서, 682면.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에 의해서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벤특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자회사에 설립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산촉법상 자회사의 설립과 달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벤특법 제11조의2).

기술촉진법상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의4제1항).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 또는 편입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를 설립시 기술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등 의결권한기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벤특법에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을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위임하고 있는 점, 또한 합병, 분할, 조직변경 등 회사의 기본기구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설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취지상 자회사의 설립촉진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당사자 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자회사 설립 역시 기술지주회사의 존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지주회사는 지분양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출자회사 주식을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의4제2항). 출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20 이상 보유를 의무화한 규정은 통상적인 기업지배에 필요한 주식보유비율로 충분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다.

산촉법과 동일하게 기술이전촉진법에서도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산촉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19]과 같이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기술을 일

19)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부터 6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기술지주

정한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때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의4제3항).

이는 기술을 출자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일정기간 내에 자회사에 출자를 가능케 하고 이때 가치평가를 생략함으로써 자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주는 적절한 입법이다.

5. 업무범위상의 비교

산촉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자회사에 대한 기술경영 및 자문업무, 자회사의 합병, 영업양도등 영업주체의 변경에 관한 업무, 자회사의 기업공개 자금지원 조달업무, 자회사의 기술의 사업화 관련 업무 등과 자회사의 홍보, 교육, 훈련 등 까지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지배 가능 하도록 법령상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산촉법 제36조의4).

벤특법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과 운영,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 이전 · 알선, 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 · 기술지원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벤특법 제11조의2).

기술촉진법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고유의 업무인 출자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와 활용을 촉진하고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해당 자회사를 운영하며, 출자회사에 대하여 기술보육, 창업보육과 기술 ·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의5).

부가적으로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투자기구 등을 통한 투자의 유

회사 현물출자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동조의 개정전에는 현물출자된 기술을 기술지주회사 설립등기일로부터로 규정되었다(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와 출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과 운영도 가능하다.

동법에서는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으로 일정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

현행법규정 등을 검토해볼 때 산촉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벤특법은 이와 더불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등 재원조달 부분에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기술촉진법은 양법의 장점만을 취합하여 적정하게 해당 업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만 산촉법상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향후 기술촉진법에도 추가하는 입법의 검토가 요구된다.

6. 회사운영에 대한 규제상의 비교

기술회사의 설립과 운영으로 얻은 수익 또는 배당액의 용도에 대하여 산촉법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②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③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④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 중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⑤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⑥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⑦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들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산촉법 제27조 제1항).

벤특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 · 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으로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② 연구개발 및 산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배당 사용업무"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 · 보수 업무, ② 연구개발 기획 업무, ③ 연구개발의 성과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등이다(산촉법 시행령 제36조의6).

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③ 해당 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④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벤특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기술이전촉진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 휴직이 가능토록 법제화 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 · 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 · 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토록 선순환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산촉법이 가장 광범위한 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사용과 배분 등에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벤특법 역시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및 기술지주회사 등의 재투자까지 수익금과 잉여금을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 등의 임직원이 되기위한 겸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촉법은 대학의 교수 혹은 조교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휴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7에서는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산촉법 제36조의6).

벤특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분야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 대하여도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휴직기간은 창업기간까지 포함한다면 3년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하에 3년 이내에 재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벤특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의7).

향후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으로 얻은 수익의 재투자는 산촉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수익금으로 얻은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후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사실상 겸직이나 휴직제도가 공공연구원의 소속 연구원이 창업 또는 기술을 출자하여 회사를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지만 본 조항의 입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산촉법상의 겸직허용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자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고 벤특법은 3년의 기간에 대한 설정, 겸직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정원에 대한 예외 등 보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7. 회사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상의 비교

산촉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과 기업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등 일정한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경우와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산촉법 제36조의5)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산촉법 제36조의7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와 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촉법 제36조의7제2항).

벤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① 유사수신행위로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②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의 거래행위, ③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일정한 행위를할 수 없으며(벤특법 제11조의6 제1항)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면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벤특법 제11조의7).

〈표 3〉 기술지주회사 법제 요약비교

		산촉법	벤특법	기술이전촉진법
대상 및 설립주체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 회사,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목 적		산학협력진흥 인력양성	창업촉진 벤처기업 전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관할부서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기술지주회사		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회사종류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임원 결격사유	○	○	○
	현물 출자특례	○	○	○
	시설기준	○	○	○
	기술제한	×	×	○ (녹색 · 첨단기술)
	지분 보유율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초과
자회사 설립 요건	주주총회	보통결의	특별결의	별도규정 없음
	회사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분 보유율	100분의 20	별도규정 없음	100분의 20
업무범위		기술경영자문 자회사 홍보 및 교육훈련 등	기술사업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기술경영자문 집합투자기구 결성 운영 등
규제		O	O	O
겸직규정		O	O	O
특이한 인 · 허가 취소사유		이익배당 사용제한 위반	자회사채무보증 유사수신행위	자회사 지분 100분의 50 이하 보유

기술이전촉진법에서도 다른법과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지주회사에 관한 등록요건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유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동법에 규정된 업무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하는 주체는 기술이전촉진법을 관할하는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장관에 의해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기술이전촉진법 제21조의6).

기술이전촉진법은 타법과 유사한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을 제한하고 있는 점,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게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은 적절하다.

Ⅴ. 결 론

추격형 연구개발(Catch-up R&D)을 수행하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1990년대 이후 탈추격 · 선도형 연구개발(Post-Catch up R&D)을 수행하도록 국가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기술성과의 활용과 촉진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성과물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에 관련한 법으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바 2010년 7월 13일 시행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구기관의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여, 공공연구기관들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를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술이전촉진

법상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개정 기술이전촉진법은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현대경제사회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기존 법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법적기반을 구축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생각한다. 동법상의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기술지주회사의 재원을 기존의 현물출자 중심에서 정부출연금을 사용가능토록 함으로써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법제와 차별화 되고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출자기술을 녹색기술 · 첨단기술에 제한한 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또한 입법론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규율하는 법규의 통합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자들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인 방법으로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입법하자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별도의 법을 입법하는 방법보다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산촉법과 기술촉진법상의 조문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규정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육성과 운영에 편의를 도모하는 형태로 입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많은 공공연구기관들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 혹은 자회사를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의 대표적인 형태로 기술지주회사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김선정 · 이동원, “기술지주회사의 법리”, 「상사법 연구」, 제25권 제4호(2007), 한국상사법학회.

이병헌 · 김선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이병헌 · 장지호 · 김선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의 고찰: 해외기술지주회사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2호(2008).

송완흡,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송완흡 외, 「산학협력단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정찬형, 「제13판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0.

추기능 외 2인, “선진특허강국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응방안과 특허정책 연구”, 「특허청 정책보고서」, 2008.

기타

청와대 보도자료,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5차회의 개최」(2009.7.1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기술기반 벤처 기업 육성방안」, 2009.

_____, 「출연연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전략 수립방안」, 2008.

_____, 「대학기술지주회사 입법안에 관한 연구」, 2006.

포스텍 산학협력중점연구소,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사례연구」, 20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창의자본주식회사 사장 공모 안내자료,「가칭 창의자본주식회사」, 2010.

_____, 「국가기술자산 활용사업을 위한 창의자본 도입 · 활성화 타당성 연구」 정책보고서, 2010.

「ETRI 기술지주회사–기술사업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제4차 출연연 정책협의회 선진화 사례발표자료, 2010.

A Legal Study on Establishment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Sun-Joon Kang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been experiencing economic growth due to its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trepreneurial ideals. It has become necessary to aim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The best way to establish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begins with innovative ideas.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utilizes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principle responsibility is to sell a technology as a patent, copyright, or license.

Under the current law,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excep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located in Daedeok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may not establish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re are two existing Acts regarding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ct 1 is effective until July 2010.

(1) THE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2)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All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may make partial amendments according to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d this new Act on April 2010 and takes effect on July 1, 2010.

This thesis is a comparative study on individual regulations and a

review on Acts from various perspectives with the goal improve the regulation issues regarding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This paper also proposes to enact reasonable and applicable provisions regarding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established by a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Survival in today's fast-paced business environment requires knowledge of how to conduc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igh potential for utilization of a technology, high possibility for its success in the industry, and strong government policy towards its research is what attracts large sums of research grant income.

Keywords

entrepreneurship, technology holding compan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